

(인천해양경찰서)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6. 6. 30.] [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2호, 2026. 6. 30., 일부개정]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인 천 해 양 경 찰 서 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게시장소 및 게시사항) 유선·도선 사업자는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.

구분	유선·도선	유선장·도선장
게시장소	출입구 또는 객실 내	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
게시사항	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)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	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)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, 폐업,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

제4조(게시물의 규격 등) ①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.

1. 게시물의 규격(크기)

- 가.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: 용지규격 A4(210mm×297mm) 이상
- 나.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: 용지규격 A3(297mm×420mm) 이상
- 다. 매표소 및 승선장: 용지규격 A3(297mm×420mm) 이상

2. 게시물의 재질: 아크릴판,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(PVC)

3. 게시물의 색상: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

②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.

③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

제5조(게시사항의 세부내용) ① 유선·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.

1.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
2.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, 다만, 「선박안전법」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
3.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, 영업구역은 “○○항 인근 ○○해리”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
4. 승객의 준수사항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
5.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
6. 인명구조장비,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
7.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·어린이용·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

② 유선장·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
2. 유선·도선 사업의 휴업, 폐업,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, 폐업일,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

제6조(게시장소) ① 유선·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. 다만,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.

1. 승선료, 선박대여료, 운임, 승선정원, 영업구역,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·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2. 구명조끼 착용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3.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·어린이용·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
4.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
② 유선장·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.

1. 승선료, 선박대여료, 운임, 승선정원, 영업구역,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2. 유선·도선의 휴업, 폐업,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

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
게시할 것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
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
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
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.

제7조(재검토 기한)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
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
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
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2호는 폐지
한다.

게시방법의 예시(제4조제3항 관련)

안내사항

승선료 (운임)	승선정원		영업 시간	영업 구역
	선원	승객		

승객준수사항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
00000(사업장명)

영업구역 및 영업시간(예시)

00000(사업장명)
※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

구명조끼 착용법

<구명조끼 착용법 설명>

비상탈출 방법

(비상탈출구 방법 설명)

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
(→ 비상통로)

※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



표식	유아	어린이	성인
몸무게	15kg 미만	15~43kg 미만	43kg 이상
키	100cm 미만	100~155cm 미만	155cm 이상

← 120mm →